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30
------------	------

2024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박승진 의원 외 20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32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점검 주기를 명시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나. 주요골자

-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4. ~ 6. 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sup>1)</sup>

- 현행 조례상 교통안전 체험시설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를 일치시

---

1)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송부(교통운영과-8199, 2024.6.5.)

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점검주기를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2)에서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3)에서는 ‘교통

2)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국가 및 시·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안전 체험시설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년 5월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총 13개소<sup>4)</sup>로 자치구 등 각 시설관리주체가 시설별 용도에 맞춰 직영 또는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중으로

서울시는 조례 제3조제2항<sup>5)</sup> 등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리

- 
-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현황 (서울시 제출자료)
- 시설현황: 13개소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교통사고체험관, 금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중계어린이교통공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 학습장, 새싹어린이교통공원, 마곡안전체험관, 자전거 체험학습장,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등)
  - 운영방법: 직영 5개소 / 위탁 8개소
- 5)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체를 통해 매년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미비한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점검 주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점검 주기에 맞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여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박승진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칠성, 성흠제,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홍국표 의원(20  
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점검 주기와 보고 주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점검 주기를 명시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안 제3 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 등의 책무)</p> <p>① (생   략)</p> <p>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정기적으로</u>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매</u> <u>년</u> ----- -----.</p>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2항에서 시장 등이 매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